

# 2023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 2차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, 국제적 역량 향상 및 한국 미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「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구분	내 용										
공모명	2023 아트페어 육성지원 2차 공모										
신청기간	2023. 5. 30.(화) ~ 6. 13.(화) 17:00까지										
신청자격	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아트페어를 기획·개최·운영하고자 하는 단체(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)										
신청자격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</li> <li>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</li> <li>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li>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</li> </ul>										
지원내용	<p>· 각 아트페어의 자생력 및 차별성 확립과 한국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(외부 기획자, 공간구성비, 작품 운송비, 홍보 마케팅비 등) 지원</p> <p>※ 우수 아트페어 특전 :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아트페어를 선정하여, 연말 결과 공유회에서 성과 공유 및 차기년도 심의에 반영하여 가점 부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지원유형(안)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공모유형</th> <th colspan="2">지원규모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지원개수</th> <th>아트페어당 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활성화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건 내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~50백만원</td> <td>[자유공모]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단체 적절한 기획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트페어의 성장 잠재성 및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단체별 유형 중복 지원 신청 불가            ※ 지원규모(지원금)는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       ※ 전시가 주목적인 그룹전, 단체전, 문화축제는 지원 불가</p>	공모유형	지원규모		비고	지원개수	아트페어당 지원금	활성화형	4건 내외	40~50백만원	[자유공모]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단체 적절한 기획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트페어의 성장 잠재성 및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원
공모유형	지원규모		비고								
	지원개수	아트페어당 지원금									
활성화형	4건 내외	40~50백만원	[자유공모]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단체 적절한 기획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트페어의 성장 잠재성 및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원								

	<p>&lt;지원 세부항목(안)&gt;</p> <p><b>지원내용</b></p> <p><b>아트페어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그램 ※서울 외 지역에 한하며 가점 부여 예) 지역작가 특별전 개최 및 지역 미술 관련 기관(미술관 등) 협력 기획프로그램 등</li> <li>• 작품 판매 및 모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예) 토크프로그램, 도슨트 프로그램, VIP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</li> <li>• 아트페어 홍보·마케팅 프로그램 예) 온라인 뷰잉룸 제작, 유튜브 송출, 언론 홍보 기획 등</li> <li>• 그 외 기타 프로그램</li> </ul> <p>공통지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아트페어 방문객 조사 및 분석 실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문객 기본 정보(성별, 연령) 및 형태(관람, 구매이력, 구매계획 등) 조사</li> <li>- 구매자 특성 및 페어별 타겟 소비자 분석, 마케팅 포인트 제공</li> </ul> </li> <li>2)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목적의 평가 실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기 사항 공통</li> <li>- 센터가 별도 용역을 운영, 지원단체별 별도 예산 측정 불필요</li> <li>- 공통지원사항 실행을 위한 적극 협조 필수</li> </ul> </li> </ol> <p>※ 공공지원 목적에 맞는 공적 역할을 겸비한 내용에 한하여 지원 예정이며 필요 시 공모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</p> <p>※ 오프닝파티 또는 개/폐막식과 같은 공공지원 목적에 맞지않는 프로그램 지원 불가</p> <p>※ 아트페어 사무국 상근직원 인건비 및 아트페어 전체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·가벽 설치비용 지원 불가</p>
지원기간	2023. 7. 1. ~ 12. 31.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금액 : 총 2억 원(최소 40백만원~최대 50백만원)</li> <li>• 지원수 : 4개 단체 내외</li> </ul>

## □ 지원 신청 방법
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‘e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’을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5. 30.(화) ~ 6.13.(화) 17:00
  - ※ 접수기간 내 ‘e나라도움’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신청 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- 제출서류 및 방법 : 전자파일 형태로 ‘e나라도움’을 통해 제출
  - ※ 아래 표 참고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

No	구분	제출서류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	•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
2	지원신청서	• 지원신청서 서식* 작성 후 제출 *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 <a href="http://www.gokams.or.kr">www.gokams.or.kr</a> )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4	증빙서류	• 사업자등록증(JPG 또는 PDF 파일) 1부 •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
5	PT 자료	• 서류심의 이후 면접심의 대상단체에 한하여 제출

※ 'e나라도움' 내 공모신청 경로  
 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공모현황>공모명'2023 아트페어 육성지원 2차 공모' 검색>신청서 작성

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
※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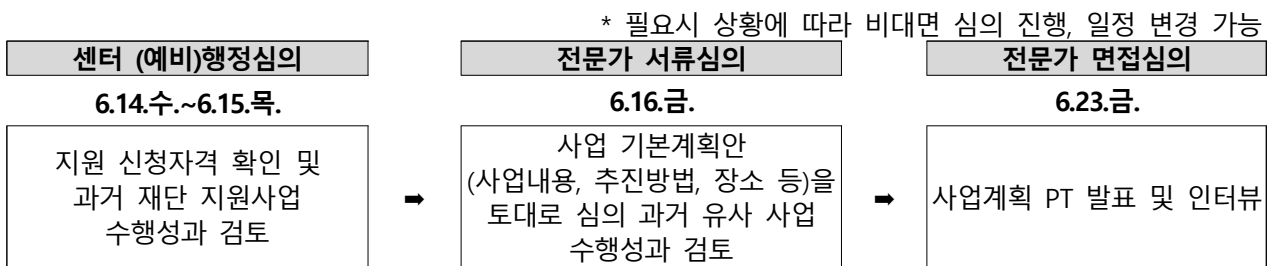
※ 본 지원 사업은 '예치형'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
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
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-9595

## □ 심의개요

- 심의방법 :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(비)대면 면접심의
- 심의절차



### ○ 심의기준

#### 1)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

- 계획, 구성, 성과 등 공모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
-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

#### 2) 운영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

-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 조직 구성

→ 사업 수행을 위한 내·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

### 3)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

→ 사업 계획의 합리성 및 사업 효과

→ 기획의 참신성과 차별화된 추진 계획

→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

→ 예산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

### 4) 기대효과

→ 아트페어 및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

→ 사업 효과의 공공성 확보

→ 중장기적인 목적 및 기대 효과, 발전의 가능성

### 5) 전년도 아트페어 평가 결과 반영

#### \* 심의 시 우대사항

- 2022년도 아트페어 평가를 받은 피평가 단체

\* 전년도 아트페어 평가 결과(점수) 반영 예정

- 지자체, 공공기관, 지역 내 민간기업 협력 시 선정 우대

\* 특히, 지역작가특별전 등 지역미술 강화 프로그램 운영시 서울 외 지역에 한하여 가점 부여

-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단체의 경우 사업성과(예: 판매실적, 개선 및 발전 노력 등)가 우수한 단체

○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

## □ 선정단체 의무사항

○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

○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등 해당 사업 관련 안내자료 필독 및 숙지하여 이행

○ 2023년 아트페어 평가 사업 평가 진행 적극 협조 및 실행 필수

○ 본 공모로 지원 받는 부대행사 외에 전체 아트페어에 대한 성과(판매액, 관람객 수 등) 제출 필수

○ 「2023 미술시장조사」 응답 필수

○ 미술품 구매 소비자 조사 적극 협조 및 실행 필수

\* 조사 설계 및 조사원 파견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실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스 제공 및 적극 협조

\* 조사 협조 및 부스 제공 : 선정단체

조사 설계 및 조사원 파견 : 예술경영지원센터

조사대상 : 아트페어 관람객

- 선정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(관람객, 매출액, 작품판매 등)는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연구 자료로 활용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
-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
- e나라도움 교육 참여 필수 (이론 1회, 실습 1회, 총 2회)
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'문화예술용역'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- e나라도움 상 정산·실적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  - \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 - \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(\* 회계검사 수수료는 <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>을 참고하여 보조금 예산 안에서 지출 가능)

## □ 선정단체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(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
  - \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 내에서만 가능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  - \*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\* 지원신청 예산 내 ‘회계검사 수수료’ 책정 필수
- \* 2023년 「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사업의 경우, 자부담은 필수 아님  
(단,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)
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유사 사업 성과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이 취소 혹은 축소될 수 있음
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\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\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### ○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<p>&lt;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2023.2) 관련 조항&gt;</p> <p>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 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</p> <p>④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<u>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</u>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</p>
--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\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\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(2021.1.6.) 제10조제1항제1호바목 참고

### □ 관련문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 
- 02-708-2254 / lhmffj@gokams.or.kr